

경운대학교 대학자체평가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」 및 「학칙」 제94조(자체평가)에 의거하여 경운대학교의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자체평가라 함은 비전 달성을 위하여 수립된 대학발전계획과 대학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·평정하는 것을 말한다

제3조(자체평가 대상) 자체평가 대상은 경운대학교의 대학·학부·학과의 교육단위, 직제상의 행정단위, 부속 및 부설기관 단위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산학협력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자체평가 시기) 자체평가는 학년도 4월 1일 자료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,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장 평가조직

제5조(자체평가 담당부서) ① 자체평가업무의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 등 총괄적 업무수행은 기획조정처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② 자체평가업무 총괄책임자는 기획조정처장으로 하며,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<개정 2021.10.01.>

1. 자체평가 운영계획 수립
2. 자체평가업무 총괄
3. 자체평가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에 반영
4.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
제6조(자체평가기획위원회) 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부총장, 기획조정처장, 교학처장, 인재개발처장, 행정지원처장, 대학원장(이하 “당연직 위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21.10.01.>

1.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.
2.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3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4. 간사는 기획조정처 직원으로 하며, 회의록 작성, 보관 및 업무연락을 담당한다.

③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④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기본방향 수립 및 조정
2. 자체평가 항목 및 지표 선정 검토
3. 자체평가 결과 활용방안 검토
4.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
제7조(자체평가연구위원회)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기획조정처장(당연직 위원)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1.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으로 한다.
2.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및 행정부서의 과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3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4. 간사는 기획조정처 직원으로 하며, 회의록 작성, 보관 및 업무연락을 담당한다.

③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④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영역, 항목, 지표 및 반영비율 개발
2. 자체평가 자료수집 및 평가
3.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

제8조(자체평가실무위원)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역별 평가업무에 교직원을 실무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

제9조(운영경비 및 수당) ① 자체평가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경운대학교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② 자체평가에 참여하는 자체평가기획위원 및 자체평가연구위원에게는 평가업무수행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평가 절차 및 방법

제10조(평가계획 수립) ① 자체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, 정기평가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, 수시평가는 총장 또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한다.

② 기획조정처는 평가 해당연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고,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평가계획을 공지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제11조(평가기준) 자체평가의 평가영역, 평가지표 등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한다.

제12조(평가방법) ①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계획을 전 단위기관에 사전 공지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자체평가는 대학, 행정부서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 다만,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한다.

③ 자체평가는 각 단위기관의 제출 자료와 핵심 평가지표 관리부서의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시행하며, 필요시 현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.

④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활성화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 및 검토하여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(평가자료 제출)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 부서는 기획조정처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제14조(평가실시) 평가관은 평가항목 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15조(이의신청) ①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대상 부서의 부서장에게 해당 학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각 평가대상 부서의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한다.

제16조(평가결과 보고) 작성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4장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

제17조(평가결과의 공시) 자체평가 결과는 경운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.

제18조(평가결과의 활용) ①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,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, 단위기관의 구조조정,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체평가 결과 우수 단위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·재정 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